

“(가칭)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본 안내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칭)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 건본주택 운영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에 한하여 방문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하며, 방문접수 시에는 자격입증 서류 및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당첨세대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안내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87-17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1~20층 5개동 총 355세대 중 일반분양 135세대
[특별공급 78세대(기관추천 14세대, 다자녀가구 14세대, 신혼부부 32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3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9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개요

구분	주택형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총세대수	기관추천 배정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민영주택	36	36.9533	20.4313	57.3845	37.3391	94.7236	20	2
	59A	59.9667	21.4248	81.3915	60.5929	141.9844	71	7
	59B	59.9425	21.8336	81.7760	60.5684	142.3444	42	5
	84A	84.9807	25.2867	110.2674	85.8681	196.1355	2	0
합 계							135	14

- ※ 상기 공급개요는 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상기 세대 타입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 계약 면적은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차 조정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전용 85m²이하 주택건설량 10% 범위)

[단위 : 세대]

구분(약식표기)	36	59A	59B	합 계
국가유공자	1(5)	1(5)	1(5)	3(15)
장기복무 제대군인		1(5)	1(5)	2(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5)	1(5)	2(10)
중소기업 근로자		1(5)	1(5)	2(10)
장애인	1(5)	3(15)	1(5)	5(25)
서울특별시				
합 계	2(10)	7(35)	5(25)	14(70)

- ※ 괄호()안의 수는 예비
- ※ “국가유공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정(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예정)	2026년 06월 11일(목)	• 일간신문 및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 홈페이지(추후 오픈)
건본주택 오픈(예정)	2026년 05월 29일(금)	• 주택전시관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20-4번지 ※ 주택전시관 운영 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예정)	2026년 06월 22일(월)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09:00~17:30) ※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장. •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신청 시(10:00~14:00), 자격입증 서류 지참 필수
당첨자 발표(예정)	2026년 07월 01일(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 상기 공급일정은 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으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 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